

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,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, 수취인미거주, 수취인 부재,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공 고 기 간 : 2026. 06. 02.(화) ~ 2026. 06 .16.(화) 15일간

2. 공고대상

차량번호	납부자	주 소	위반내용	해태기간	과태료 금액(원)	비 고
53로1817	변**	부산광역시 남구	말소등록 기간경과	2023.10.16. ~2026.02.12.	500,000	본처분

3. 공고내용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지연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나.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다.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가 있을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이의제기 방법

- 우편 제출: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, 2층 말소등록 담당자
- FAX 제출: 051-888-6923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51-290-54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06. 02.

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